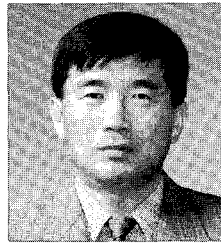


온돌바닥 단열재 공사, 난방시공업 1~2종 업종이 수행해야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고영관

현행 건축법 제59조 설비규칙 21조의 단열재 규정에 있어서 온돌바닥 단열재 공사는 난방시공업 1~2종의 업무라는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을 받았다.

동법에 의하면 난방을 요하는 건축물 최하층의 바닥인 경우 60mm이상 단열재 또는 그에 해당하는 열관류율값의 단열재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2층 이상 기준층은 40mm이상 단열재 또는 그에 해당하는 열관류율값의 단열재를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수십만(무면허 및 면허업자 포함) 보일러설비 및 소규모주택 수리업자들은 저가 공사수주로 인하여 바닥단열재를 삭제 또는 은박지 매트를 단열재인양 바닥에 깔고 관행처럼 시공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질의/회신 내용을 보면 무면허업자

의 부실공사를 묵인한 집주인(원도급자)도 공동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1호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함)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전국의 우리 회원들께서는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모범이 되고 건축법에 의한 적합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무면허업자 및 난방시공업 1-2종 면허보유자들의 부실시공 현장을 목격하면 즉시 행정당국에 고발하여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전국의 각 지부(지회)에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현장에서 공사수주를 할 때 단열재 부실공사에 의한 난방 에너지낭비원인을 집주인에게 설명하여 주고 다른 업자들보다 차별화된 시공과 난방비 절약으로 집주인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아이디어 발상으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에너지낭비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줄

여야 할 것이다.

에너지관리공단 자료에 의하면 국가적으로 매년 약 370억달러의 석유를 수입하여 이중 약 20%인 74억달러(우리돈으로 9조6천억)가 주택난방 에너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바닥단열재 부실공사로 인한 보일러 기름 약30%인 2조8천억원이 방 바닥 밑으로 빠져 나갈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근거 내용으로 볼 때 우리 회원들의 임무는 막중하다.

주택 에너지절약의 최선봉에서 일선 현장을 지키는 업종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규정에 의한 적합한 단열재 시공으로 에너지낭비를 근원적으로 줄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집주인이 알던 모르던간에 바닥단열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차별화된 영업을 추구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보다 새로운 발상으로 앞서가는 영업전략을 세워야 만이 살아갈 수 있다.

또한 우리 회원 스스로가 변하면서 각 분회를 중심으로 뚝뚝뚝쳐 우리업종을 지키고, 정부를 상대로 그에 따른 우리의 권리를 법 테두리안에서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항상 규제에 의한 불이익만을 당하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사무실 보유법 개정에서 모든 회원들께서 통감하고 있을 것이다.

전국의 회원들을 조사하여 보니 1년 매출이 대략 5천만원 정도가 대다수이며,, 매출액이 1억이 넘는 회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반면 5천만원 이하도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0% 마진을 볼 때 연간 1천 5백만원 정도를 순수입으로 본다면 면허를 갖고 사업을 하면서 극히 적은 수입에 불과하다. 이러한 실정에 1천만원이 넘는 사무실을 보유하라는 규제는 우리 회원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이 시점에서 더 이상 과거에 매달려서는 안 될 것이다. 쾌적하고 안전한 난방문화 정착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긴 안목에서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며 회원간에 합심하여 선진 기술 습득과 정책적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꿈을 이루는 세상-새천년의 한국"
건설교통부

위급 9427-712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건설정책과 과장 최창기 사무관 김민정	/전화 504-9651 담당자 권오학 kwoh@moct.go.kr	/한송 603-6430	
문서번호: 건경38070-1169 시행일자: 2001.09.21 (3년) 공개여부: (공 개)	접수 일자 시간 번호	지시 결재 처리과 담당자	공람 심사자
수신: 김양욱 참조:	제목: 민원회신		

귀하가 건설업 업종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결의 요지
 - 주택의 온돌바닥 단열재 설치공사는 어느 업종인지 여부 및 무등록 시공사의 처벌 규정
 - 회신 내용
 - 귀 권의 사항이 어느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기계설비업종 또는 난방시공업1,2종(공사예정금액 1천만원이하)에 유사한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업종은 상규정경과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 기술상의 특성 등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선택하여야 할 것이며, 건설업 등록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는(원·하수급자 포함) 동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건설교통부장



수신처 : 광주시 북구 중흥동 646-13 옥천빌딩 3층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양욱